

웰컴저축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WELCOME 퇴직연금 정기예금
- 특 징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2. 주요내용

예금과목	• 정기예금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계약기간	• 12개월							
가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저 ▷ 1원 이상최대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DB형 : 제한없음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복리)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예금자보호여부	DC/IRP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DB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계좌에 입금, 가입금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							
적용금리 (세금납부 前)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본금리는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됨*신규(자동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시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음							
만기이자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자계산방법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table><tr><td>신규일</td><td>만기일</td></tr><tr><td>●</td><td>●</td></tr><tr><td>[이자계산산식]</td><td>원금×{(1+금리/12)ⁿ⁻¹} (n은 경과월수)</td></tr></table>		신규일	만기일	●	●	[이자계산산식]	원금×{(1+금리/12) ⁿ⁻¹ } (n은 경과월수)
신규일	만기일							
●	●							
[이자계산산식]	원금×{(1+금리/12) ⁿ⁻¹ } (n은 경과월수)							
만기처리방법	DC/IRP	•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후 상환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만기후금리	DB	•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만기후금리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금리를 적용							

중도해지금리 및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금리와 동일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금리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예치기간</th><th>중도해지금리</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약정기간의 80% 이상</td><td>약정금리의 90%</td><td rowspan="6">전구간 0.1% 보장</td></tr> <tr> <td>약정기간의 60% 이상</td><td>약정금리의 70%</td></tr> <tr> <td>약정기간의 40% 이상</td><td>약정금리의 50%</td></tr> <tr> <td>약정기간의 20% 이상</td><td>약정금리의 30%</td></tr> <tr> <td>약정기간의 20% 미만</td><td>약정금리의 10%</td></tr> <tr> <td>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td><td>0.1%</td></tr> </tbody> </table>	예치기간	중도해지금리	비고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전구간 0.1% 보장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예치기간	중도해지금리	비고														
약정기간의 80% 이상	약정금리의 90%	전구간 0.1% 보장														
약정기간의 60% 이상	약정금리의 70%															
약정기간의 40% 이상	약정금리의 50%															
약정기간의 20% 이상	약정금리의 30%															
약정기간의 20% 미만	약정금리의 10%															
계약일로부터 1개월 미만	0.1%															
중도해지금리 및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해지금리 계산방법 <p style="color: red;">아래 그림은 중도해지금리를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적용되는 중도해지금리는 실제 가입기간 및 예치기간에 따라 적용</p>															
특별중도해지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해지시에는 가입 당시(재예치된 경우 최종 재예치 당시) 1년제 약정금리 제공 															
특별중도해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④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⑤ 수탁자의 사임 ⑥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⑦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⑧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⑨ 수수료의 징수 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분할해지 (일부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②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③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만기재예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 예금의 만기시 해당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재예치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쌍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시 고객은 일정 기간 이내에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고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연계·제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없음

3. 유의사항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4.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등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웰컴저축은행 고객센터(1661-9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elcome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용어 설명

용어	내용
압류	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질권설정	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
경과기간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